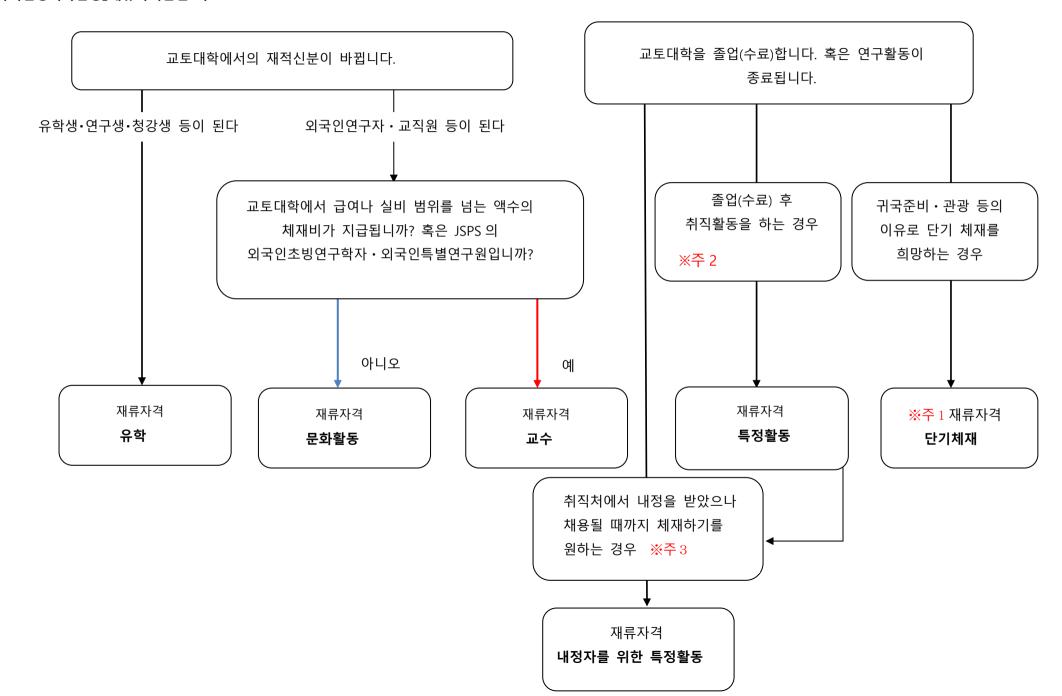
【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】재류자격판별 차트



※주1: 현재 보유 중인 재류자격의 활동내용을 종료하고 재류기한을 넘겨서 귀국준비나 관광 등의 이유로 체재하는 경우,

'단기체재'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재류자격 변경 후에 단기체재로 부여되는 재류기간은 15일 혹은 30일입니다.

(단, 심사 결과가 희망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.) 이와 함께 현재 소지 중인 재류카드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
주 2: 체류자격 '유학'을 득하여 체재 중인 외국인에 한해 변경허가신청이 가능. 취로비자((예)체류자격 '교수' 등)를 득하여 체재 중인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됨.

주 3: 체류자격 '유학'을 득하여 체재 중인 외국인 및 계속해서 취직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체류자격 '특정활동'을 득하여 체재 중인 외국인만이 대상임.